

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사례 공유

< 2016.11.22. 감사실 >

□ 외부 강의·강연 등 외부활동

① 공청회,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?

-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·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·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

②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비, 숙박비,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는지?

-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,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

※ 사례금외 실비 수준 교통비, 숙박비 및 식비 수령 가능
단, 공문 별도 지급 명기 필요

③ 법령(조례·규칙을 포함)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?

-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※ 전자정부법 관련 위원회 등

④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?

-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,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·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

의견·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 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※ 감리사 시험출제 등

⑤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?

-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·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

⑥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되는지?

-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 규정이며, 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. 다만,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

□ 금품수수 위반사례

○ 대구시 공무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에게 음료수를 건넸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

* 공직자간 금품수수 위반 첫 사례

< 주요 내용 >

- ◆ 대구시 공무원 A팀장(5급), B씨(6급)가 업무 담당자로서 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 음료수 1박스(1만800원)를 가지고 권익위 방문
- ◆ 권익위 직원은 거절하였으나 1시간가량 설명을 마친 뒤 A팀장 등은 주스를 담당 공무원 옆 탁자에 두고 나옴
- ◆ 직원은 곧바로 기관장에게 신고하였고, 권익위는 금품 제공 혐의로 대구지법에 과태료 부과 의뢰
- ◆ 대구시는 법원이 과태료(2~5배) 부과 결정을 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두 직원의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